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정관

서기	1954년	1월	27일	제정
서기	1954년	6월	30일	일부개정
서기	1954년	8월	3일	п
서기	1957년	1월	27일	п
서기	1959년	3월	19일	п
서기	1962년	4월	10일	"
서기	1964년	1월	29일	"
서기	1964년	6월	15일	"
서기	1968년	2월	21일	п
서기	1969년	1월	24일	п
서기	1971년	5월	10일	п
서기	1972년	9월	19일	п
서기	1973년	2월	13일	п
서기	1974년	3월	20일	п
서기	1975년	2월	13일	п
서기	1976년	6월	4일	п
서기	1976년	12월	30일	п
서기	1980년	12월	10일	"
서기	1981년	8월	20일	"
서기	1982년	2월	27일	"
서기	1984년	1월	30일	п
서기	1986년	8월	2일	"
서기	1986년	11월	26일	"
서기	1987년	2월	20일	"
서기	1988년	2월	27일	"
서기	1990년	2월	15일	"
서기	1991년	2월	20일	"
서기	1993년	2월	16일	"
서기	1993년	6월	10일	"
서기	1994년	3월	5일	"
서기	1995년	4월	6일	"
서기	1996년	11월	14일	"
서기	1997년	3월	10일	"
서기	1998년	4월	1일	"
서기	1999년	3월	12일	п
서기	2007년	4월	20일	"
서기	2011년	7월	1일	п
서기	2013년	4월	17일	п
서기	2020년	4월	29일	п
서기	2021년	5월	10일	п

제1장 총 칙

본 협회는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(이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칭한다)에 관한 국책수행에 협력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총 역량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이를 위한 사업을 행하고 정부의 위탁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회원의 상호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협회는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라 칭한다.

본 협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법인으로 한다.

제3조(통할구역) 본 협회의 통할구역은 경기도 일원으로 한다.

제4조(소재 및 연락소 설치) 본 협회의 사무소는 경기도청 소재지에 둔다.

다만, 서울특별시청 소재지 및 경기도 일원에 연락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사업의 종류) 본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
- 1.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건의 헌책 및 협력
- 2. 협회사업에 관한 지도조사 및 연구
- 3. 운임운송 기타 회원의 사업에 관한 통할
- 4. 회원의 사업에 필요한 물자구입 및 공동시설
- 5. 회원의 공제
- 6. 회원의 사업에 필요한 융자
- 7.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과 지도에 관한 사항
- 8. 종사원의 취업관리
- 9. 종사원 연수기관의 설립운영
- 10.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- 11. 기타 이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6조(사업상황의 검사) 본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시는 회원의 사업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.

제7조(수수료 징수) 본 협회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

제2장 회 원

제8조(회원의 자격)

①경기도 관내에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필한 자와 영업소 및 지점을 둔 자로서 본 협회에 가입한 자를 회원으로 한다.

다만, 회원의 의결권 정수는 허가 등록대수 20대 이상 업체를 1사1표로 하며, 20대 미만업체는 20대 미만인 다른업체와 연대하여 20대 이상으로 하고,

그 중 대표자 1명을 대의원으로 정한 경우와, 회비 불입 차량대수가 150대 이상인 영업소장 및 지점장은 총회에서 1표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.<개정 20・4・29>

②법인인 회원은 그 대표자를 정하여 이 협회에 계출하여야 한다.

③동일인이 2개 업체 이상의 대표자일 경우에는 업체 수대로 권리를 행사한다.

제9조(회원의 권리) 본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권리를 향유한다.

- 1. 총회에서의 의결
- 2. 총회 소집
- 3. 이 협회에 할당된 물자의 수배
- 4. 이 협회서류 열람
- 5. 이 협회의 공동시설 이용

제10조(회비 부과)

- ①본 협회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비를 부과한다.
- 1.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체에 대하여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매월 부과한다.
- 2. 본 협회의 회원은 매월 부과되는 회비를 당해 월의 20일까지 납부한다.
- ②회비는 회원의 보유대수 비례로 이를 부과한다.
- ③가입비는 회원의 신규면허대수 비례로 이사회 결의에 의거 이를 부과한다.
- ④특별회비는 본 협회의 특별한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로서 회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부과할 수 있다.
- ⑤ 협회운영상 부득이 제기금을 갹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거 이를 부과한다.

제11조(회원의 제재)

- ①본 협회는 회원이 정관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 · 4 · 29>
- ② 협회비를 1년분 이상 장기 체납하거나 소송등으로 협회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.<신설 13·4·17>
- ③ 전항에 의한 구체적인 제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 <신설 13.4.17>

제3장 임 원

제12조(임원 및 선출방법)

- ①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1. 이 사 장 1명
- 2. 부이사장 2명
- 3. 전무이사 1명
- 4. 이 사 32명 이내
- 5. 감 사 2명
- ②이사장, 부이사장, 이사 및 감사는 회원중 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다만, 부이사장 및 이사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형위원회의 구성은 7명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07 4 20>
- ③전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재난 등으로 집합총회를 개최할 수 없어 현장투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얻어 서면투표 또는 일정장소에 서의 워킹스루 방법 및 정보 · 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 및 운용체제를 사용한 전자투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<신설 21 · 5 · 10>

④이사장 당선은 입후보자 중에서 최다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.

다만,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.

기타 이사장 선거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본 협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.

<신설 07 • 4 • 20>

⑤전무이사는 회원 이외의 자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장이 이를 임명한다. < 개정 11・7・1>

제13조(임원의 임기 및 보선 방법)

- ①본 협회의 이사장, 부이사장 및 이사, 전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단,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<개정 11 7 1, 20 4 29>
- 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존기간으로 한다.
- ③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 취임시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.
- ④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는 다음에 의하여 보선한다.
- 이사장 및 부이사장과 감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고 기타 임원은 이사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결의로서 보선한다.

제14조(회원의 대표권)

- ①이사장은 이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업무를 통리하고 각 회 의장이 된다.
-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에는 부이사장이 이를 대리한다.
- ③ 이사장, 부이사장 모두 유고로 궐위시에는 이사중 연장자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 <개정 07・4・20>

제15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협회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감사한다.

제16조(임원의 처우)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전무이사는 유급으로 한다.

제17조(고문)

- ①이 협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②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이를 추대한다.

제4장 회 의

제18조(회의 종류와 소집방법)

- ①본 협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로 하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 서면총회를 할 수 있다.
- 단, 서면총 회의 결의 사항은 총회에 보고한다.
- ②정기총회는 사업년도 종결 후 90일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에 의하여 개최한다. <개정 07·4·20>
- 1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2. 회원의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이유를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장은 이를 소집하여 야 한다.

제19조(성원과 의결)

①회의는 의결권이 있는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의결로서 채택한다.

다만. 정관의 변경 및 해산은 출석인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<개정 20 • 4 • 29>

②제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은 사업년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본 협회에 대의원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된 자에 한하여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제20조(표결권)

- ①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- ②감사 및 전무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제21조(긴급사항 조치)

- ①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시급하여 총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.
- ②전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22조(총회 의결사항)

- ①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요한다.
- 1. 정관의 변경 및 해산
- 2. 수지예산과 회비 기타부과금 및 징수방법
- 3. 회원의 사업통할 규정의 제정 및 변경
- 4. 기채 및 그 상환
- 5. 기타 중요 사항
- ②전항 제1호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23조(대리권) 총회에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공부상의 임원이거나 또는 의결권 있는 회원에게 위임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임원선출에 따른 선거권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공부상의 임원 이외에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<개정 07 · 4 · 20>

제24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요한다.

- 1. 제6조의 검사
- 2. 제10조의 경비 부과 방법
- 3. 제11조의 사업에 대한 제한
- 4. 제13조의 4항의 이사 보선
- 5. 기타 중요 사항

제25조(회의록의 작성)

- ①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전말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 회원 3명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.
- 1. 개회의 일시 및 장소
- 2. 회원 총수 및 출석 인원의 성명
- 3. 부의사항
- 4. 의사의 요령
- 5. 결의사항 및 찬부의 수효
- 6. 기타 참고사항
- ②이사회의 의사록은 전항에 준하여 작성하되 의장 및 출석 이사 3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5장 자산 및 회계

제26조(자산) 이 협회의 자산은 다음 사항으로서 이를 조성한다.

- 1. 협회에 속한 토지, 건물설비 및 기타 물건
- 2. 부과금 및 회비
- 3. 보조 또는 기부에 의한 재산
- 4. 이 협회사업 및 재산에서 생한 수익
- 5. 사용료 및 수수료
- 6. 기타 수입

제27조(회계년도) 이 사업 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.

제28조(협회 자산의 열람) 이사장은 정기총회의 회일 1주일 전에 협회의 재산목록, 대차대조표, 사업보고서, 수지예산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받은 후 협회에 비치하여 회원의 열람에 공한다.

제29조(결산승인) 이사장은 전조의 감사가 감사한 재산목록, 대차대조표, 사업보고서, 수지결산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.

제30조(규정 제정) 이 정관 외 선거관리규정등 제반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제정한다. <개정 07 · 4 · 20>

제6장 해 산

제31조(해산과 청산) 본 협회는 총회에서 해산결의가 있을 때 해산하고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장이 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정관은 서기 195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창립비) 본 조합의 창립비는 300원으로 하고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분담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조치) 이 정관 개정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일로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199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 다.

부칙 <07・4・20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1 • 7 • 1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최 <13・4・17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201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최 <20・4・29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1 · 5 · 10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